

제3회 반부패청렴실무추진반 회의결과

1. 회의개요

□ 관련 근거

- 감사1부-1910(2010.06.24.)호, “반부패 청렴 추진조직 운영계획(안)”
- 사회책임경영실천예규 제14조 【반부패청렴실무추진반】

□ 일시 및 장소 : 2014. 7. 10.(목), 14:00 ~ 15:40, 7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총 18명

- 반 장 : 감사실장
- 반 원 : 예산기획부장, 노사협력부장(代 인사부장), 사회책임경영부장, 홍보기획부장, 고객서비스부장, 가입기획부장, 급여기획부장, 장애인 지원사업기획부장, 정보기획부장, 가입정보부장, 감사기획부장, 운영 기획부장, 준법지원실 주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장애심사지원부장, 국제협력부장(代 국제업무부장)
- 간 사 : 이상호 차장

□ 회의안건 : 반부패 자율시책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과제 실행계획

- 1 -

2. 회의내용

□ 과제 제출 관련 권익위 평가기준 및 수범사례 소개(회의자료 참고)

- 반부패 자율시책 및 부패취약분야 과제 평가기준
- 타기관 수범사례 소개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승진제도 마련’ 등 7개 기관 사례

□ 감사실장 총평

- 전년 대비 과제 발굴 노력은 향상 되었으나 권익위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됨
- 부서별 대부분의 과제가 부패위험분석이 되었으나 타기관 수범 사례와 같이 **부패행위와의 연관성에 대한 표현이 더 언급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 바람**
- **제도화 여부는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3분기내에 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완료될 수 노력해주기 바람** **효과성에 대한 언급도 제량실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과제는 자율시책 또는 취약분야 과제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서별로 재검토하여 제출해주기 바람
- **과제 제출과 관련하여 권익위 평가 대응뿐만 아니라 본부 부서 내부경영평가에도 반영**되므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여 우수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2 -

3. 기타 사항

□ 회의 사진



□ 부서별 과제 목록

부서명	과제명(반부패 자율시책 및 취약분야 과제)
기획조정실	비계량평가반 운영 개선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자율·책임경영 강화
인재경영실	승진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도입
	교육과정별 청렴교육 내재화
총무지원실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추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절차 마련을 통한 업무 공정성·투명성 강화
	기술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을 통한 거래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3 -

부서명	과제명(반부패 자율시책 및 취약분야 과제)
홍보실	청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실명제 전면 실시
	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지식스폰서 활동 개선
고객지원실	기관 홍보물품 제작·관리 투명성 제고
	노후설계 전문강사 운영예규 제정을 통한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가입지원실	정산제도 도입으로 사용자 허위신청 부패 방지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부패 위험 근절
연금급여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다중관리시스템 구축
	구상금 관리 체계 재구축으로 부패위험 사전예방
장애인지원실	부적정한 환수금 소멸시효 완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심사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한 부적정 장애인등록 사전차단
장애통합지원실	근로능력평가의 부패 위험성 감소를 위한 합리적 기준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후관리체계 확립
정보시스템실	개인정보 불법거래 범죄예방을 위한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각종 수당 및 급여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정보화기획본부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적용으로 업무 투명성 강화
	연금업무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기록의 정확성 제고
기금운용본부	기금 Data 송수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민자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부패요인 사전 차단
준법지원실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기금운용본부 국외출장 사전검토 실시
	기금운용 관련 지침·기준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국민연금연구원	자율연구 제재규정 명문화화를 통한 반부패 실행력 강화
	국민의 사회보장협정 혜택 극대화 및 해외수급자 부당수급 방지
국제협력센터	외국인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외국인 권리보호 강화

- 4 -